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2022.09.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	본인	■ 당사 현장접수처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 (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)
	○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“상세”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■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공급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“상세”로 발급)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■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 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	
신혼 부부 특별 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혼인신고일 확인,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■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/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■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[아래 신혼부부 ·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■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) 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
	○		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) 제출(임신증명서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입양의 경우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■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 입증 서류	○		부동산소유현황 (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)	본인 및 세대원	■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■ (발급기관)대법원 인터넷기소(www.iros.go.kr) > 회원가입 > 대기열람 / 발급 > 부동산 > “부동산 소유 현황”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발급 ■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■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■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,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※ 공급신청자의 해외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동일 국가 체류여부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■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의 체류기간 연속90일 미만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■ 소형 · 자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■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‘본인 발급분’에 한함. (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)
	○		위임장	본인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입증 서류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[2022.09.30(금)]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※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구분	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(매월 신고 납부대상사확인으로 발급)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“주(현)”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/세무서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- 해당직장
소득 입증 서류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	①,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부등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※ 단,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국민연금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(원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③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사실 없음) 제출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 제출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
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 / 프리랜서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단,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/세무서 ②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- 행정복지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현장접수처에 비치)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사실 없음) 제출 ※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(전년도 1월 1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)	① 현장접수처 ② 세무서	
자산 입증 서류	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	① 부동산 소유 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② 등기부등본(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등기부등본을 발급) ③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(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[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비주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⑤ 일반건축물: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(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제출) ※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(개별공시지가 기준)	①, ② 등기소 ③, ④ 행정복지센터 ⑤ 위택스
	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	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[취득세 및 재산세 항목별 부동산(주택, 토지, 건축물) 미과세 증명]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> 회원가입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“부동산 소유 현황”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※ 세대원별 각각 발급, 발급 시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① 행정복지센터 ② 등기소

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소득기준 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청약신청자만 자산입증(부동산 소유 현황 등)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